

2025. 12

희망찬 농장, 안전한 식탁, 건강한 대한민국!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서울특별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ontents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핵심

6

PART 1 원산지 표시제란?

11

- Q1. 원산지 표시란? 12
- Q2. 원산지 표시의 목적은? 13
- Q3. 원산지 표시제 관련 법은? 13
- Q4. 원산지 표시제 업무 소관기관은? 13
- Q5.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자는? 13
- Q6.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은? 14
- Q7. '외국산'을 '수입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14

PART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과 기준

15

2-1. 공통사항

16

- Q1.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업소는? 16
- Q2.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17
- Q3. 음식점에서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는? 18

2-2. 음식점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19

- Q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19
- Q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21
- Q3. 돼지·닭·오리·양 및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23
- Q4. 쌀의 원산지 표시는? 26
- Q5. 흑미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는? 27
- Q6.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28
- Q7.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는? 30
- Q8. 배추김치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31
- Q9. 콩의 원산지 표시는? 32

2-3. 상황별 원산지 표시방법

34

- Q1.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섞어 하나의 메뉴로 조리하는 경우는? 34

Q2.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어 조리하는 경우는?	35
Q3. 음식점에서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36
Q4. 음식점에서 원산지 일괄 표시는?	36
Q5.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38
Q6. 음식점에서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 세부기준은?	40
Q7. 음식점에서 냉동핫도그(빵류)를 구입하여 전자레인지에 데워 판매 시 원산지 표시는?	42
Q8. 음식점에서 가공 완제품을 조리하지 않고 판매·제공 시 원산지 표시는?	43
Q9. 음식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44

2-4. 매장에서 원산지 표시방법 45

Q1. 음식점에서 메뉴판,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45
Q2.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46
Q3.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부착 위치는?	46
Q4. 음식점에서 키오스크(테이블오더)를 이용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47
Q5. 음식점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47
Q6.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48

2-5.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49

Q1.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49
Q2.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 시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50
Q3. 배달앱 등으로 포장주문 후 손님이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51

PART 3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53

Q1.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은?	54
Q2.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은?	55



참고자료

5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연락처	58
-----------------------	----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핵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개: 농산물 9, 수산물 20)

» 농산물(9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 (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20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 수산물 가공품, 조리·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진열하고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거래명세서 등의 범위 : 공급(납품)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간이 포함), 원산지 증명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

음식점에서 꼭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축산물만 해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전자적 형태 포함)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함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양념육류, 분쇄가공육,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되며, 햄·소시지·베이컨 등은 보관대상 아님.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

축산물 |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도 포함
-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 (다만,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 생략 가능)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① 배추와 ②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

- 배추김치 가공품,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임 (봄동, 얼갈이배추로 만든 배추김치 포함)

※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된 열무김치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대상 아님
배추김치 이외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 대상 아님



배추
김치



배추
겉절이



백김치

쌀

» 밥·죽·누룽지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 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흑미, 현미, 유색미 및 찌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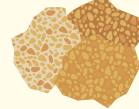
※ 떡볶이, 떡국 등에 사용된 쌀은 원산지 표시대상 아님



밥



죽



누룽지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콩국수·콩비지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되는 콩 가공품(콩 주원료) 포함



두부



콩국수



콩비지

📄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

표시위치

» 메뉴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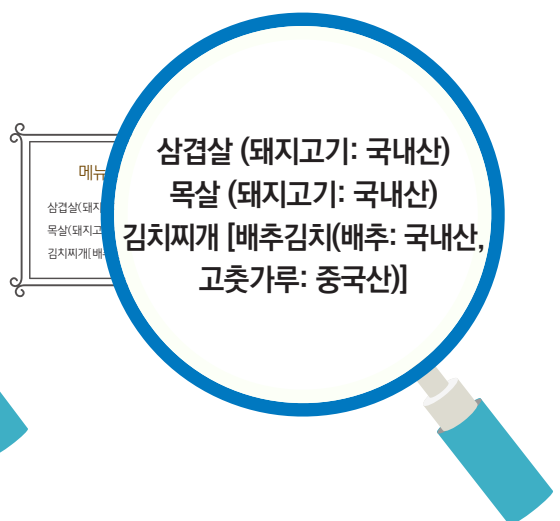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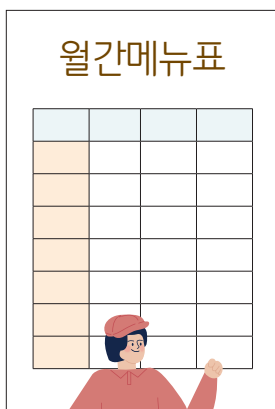
»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메뉴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음식점 형태별 표시 방법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취식장소가 벽,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풋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인 경우
 -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교육·보육 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배달앱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

표시위치

» 메뉴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

-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메뉴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 첫 화면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

글자크기

» 메뉴명 또는 가격 표시(최초 등록된 가격 표시 기준)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

글자색

» 메뉴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은 색

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

» 표시 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¹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²



PART

1

원산지 표시제란?



PART
1

원산지 표시제란?

Q1 | 원산지 표시란?

- ▶ 원산지 표시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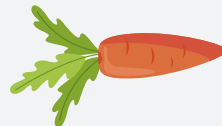
- 올바른 표시: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 올바르지 않은 표시: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예시

- 올바른 표시: 당근(중국산), 돼지고기(칠레산), 쇠고기(미국산)
- 올바르지 않은 표시: 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워싱턴)



고사리(국산)



당근(중국산)



고사리(치악산)



돼지고기(유럽산)

Q2 | 원산지 표시의 목적은?

▷ 첫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둘째, 공정한 거래 유도

▷ 셋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3 | 원산지 표시제 관련 법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 원산지 표시제 업무 소관기관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Q5 |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자는?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Q6 |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은?

- ▶ 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알아두기

- ▶ **국내에서 가공품을 제조·가공하였다고 하여 원산지를 "국산(국내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예시 미국산 콩을 원료로 국내에서 두부를 제조·가공 하였을 경우

- 올바른 표시: 두부(콩: 미국산)
- 올바르지 않은 표시: 두부(국산), 두부(국내산), 두부(김천시)

Q7 | '외국산'을 '수입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 ▶ 2016.4.27.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개정으로 '수입산'이라는 표시 기준은 **'외국산'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7.1.부터 의무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수입산'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아니며,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PART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과 기준



PART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과 기준

2-1. 공통사항

Q1 |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업소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메뉴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다류(茶類)·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급식소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Q2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등의 범위**: 공급(납품)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간이 포함), 원산지 증명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

알아두기

▶ 음식점에 여러 대의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마다 보관 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표시 대상 29개 품목에 해당되는 식재료마다 원산지 표시



또는



냉장고 앞에 표시대상 29개 품목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여 부착

품명	원산지
쇠고기	국내산 한우
닭고기	브라질산
삼겹살	국내산
배추김치	중국산
두부	콩: 외국산

Q3 | 음식점에서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전자적 형태 포함)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되며, 햄·소시지, 베이컨 등은 보관대상이 아님

* 대상품목(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 쌀, 배추김치 등 다른 품목도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장 포함)을 보관하였다가 원산지 증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냉장고 등 보관 장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알아두기

▶ 축산물 거래명세서와 달리 쌀, 콩, 배추김치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는 없음

위반사례 | 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돼지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돼지갈비 원료(포갈비, 뼈삼겹살 등)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20만원 부과**

2-2. 음식점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Q1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 29개 품목(농축산물 9, 수산물 20)입니다.

농축산물(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2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및 부세

▶ 대상품목을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경우,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은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쌀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한 경우와 콩은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함),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한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위반사례 | 원산지 거짓표시

“○○산채”라는 음식점에서 산채비빔밥 메뉴를 판매하면서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판에는 **‘고사리: 국산, 도라지: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됨



Q2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 용도(반찬용)에 구분 없이 쇠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직접 조리하여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쇠고기 장조림의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임

▶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부산물 포함), 포장육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젓소)

• 외국산

갈비(쇠고기: 미국산), 등심(쇠고기: 호주산), 갈비탕(쇠고기: 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설령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

⇒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알아두기

▶ 전골류 등 조리 시 육수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쇠고기 뼈는 부산물로서 '식육'에 포함되므로 원산지 표시해야 함

* 부산물의 종류: 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선지)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

위반사례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한우”라는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소갈비살**을 구입하여 생갈비살, 양념갈비살 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는 **‘쇠고기: 호주산,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

▶ 형사입건

※ 원료 수급사정에 따라 쇠고기를 호주산과 미국산을 번갈아 가면서 판매·제공할 경우에도 **‘쇠고기: 호주산, 미국산’**으로 **함께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이며**,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원산지 미표시

“분식○○”이라는 음식점에서 떡볶이 메뉴에 **우삼겹을 토핑**으로 올려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

“○○식육식당”이라는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를 숯불구이용 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으로 하였으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30만원 부과

Q3 | 돼지·닭·오리·양 및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 ▶ 돼지·닭·오리·양 및 염소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 국내에서 가공된 식육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주원료) 중 가공품에 사용된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갈비(돼지고기: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족발(돼지고기: 국내산)
- **외국산**
갈비(돼지고기: 미국산), 삼겹살(돼지고기: 스페인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부대찌개[돼지고기(국내산), 햄(돼지고기: 외국산), 소시지(돼지고기: 국내산)]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오리백숙(오리고기: 국내산)
- **외국산**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오리로스(오리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닭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후라이드치킨(닭고기: 국내산)
- **외국산**
닭볶음탕(닭고기: 미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닭 부산물인 닭염통(국내산), 닭연골(국내산)로 모듬꼬치 제조 시**
⇒ 모듬꼬치(닭고기: 국내산)

※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닭염통, 닭연골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임

양 및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염소탕(염소고기: 국내산)
- **외국산**
양고기(양고기: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염소탕(염소고기: 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음)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알아두기

- ▶ **쉽표(,)로도 섞음 표시 가능:**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호주산)”
-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를 번갈아 가며 판매·제공하는 경우,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불고기(쇠고기: 호주산)”

위반사례

◎ 돼지고기 거짓표시

“○○족발”이라는 음식점에서 **스페인산 삼겹살**을 족발·보쌈의 재료로 사용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족발보쌈세트(국내산)’, ‘굴보쌈(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오리고기 거짓표시

“○○쌈밥”이라는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훈제고기**를 월남쌈의 재료로 사용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VIP월남쌈세트(국내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돼지고기 위장판매(거짓표시)

“○○막창”, “○○막창 2호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미리 국내산 돼지막창에 수입산 돼지막창을 섞어서 조리한 후 손님들에게 국내산 돼지막창으로 **위장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캐나다산 및 미국산 돼지막창을 구매하여 국내산 돼지막창과 섞어서 조리한 후 **국내산 돼지막창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함

➡ 형사입건

Q4 | 쌀의 원산지 표시는?

-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찰쌀, 현미 및 찌쌀**을 포함)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가공된 쌀 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1~3순위(주원료)] 중 가공품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쌀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쌀(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
- **외국산**
쌀(미국산), 잡곡밥(쌀: 미국산, 현미: 국내산), 흑미밥(쌀: 베트남산, 흑미: 국내산)

알아두기

-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떡볶이, 떡국에 사용된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

위반사례

◎ 쌀 원산지 미표시

“○○요리”라는 음식점에서 누룽지탕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누룽지(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쌀 원산지 거짓표시

“○○밥집”이라는 음식점에서 냉동가공품인 **새우볶음밥(쌀: 미국산)**을 가열 조리하여 볶음밥 메뉴로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Q5 | 흑미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는?

▶ 흑미는 농수축산물 표준코드(<http://at.agromarket.kr>)에서 “쌀”의 소분류 품종으로 분류되어 흑미를 음식점에서 ‘밥, 죽, 누룽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 기장쌀, 보리쌀, 수수쌀, 울무쌀 등 잡곡류·맥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

위반사례 | 쌀(흑미) 원산지 미표시

“○○맛나”라는 음식점에서 **국내산 흑미와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밥을 지어 공깃밥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미표시함**

➡ 과태료 30만원 부과



Q6 |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에 대해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경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 **국내산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경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수입 가공품(중국산) 배추김치 사용**
배추김치(중국산)
⇒ 수입 가공품인 배추김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

알아두기

- ▶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임
- ▶ 주원료가 열무이고,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된 열무김치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열무김치에 포함된 얼갈이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 ▶ 배추김치가 아닌 **깍두기, 갓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등은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아님**
- ▶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며, 배추김치 이외에 닭볶음탕, 육개장, 떡볶이 등의 메뉴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아님**

위반사례

◎ 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식당”이라는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소비자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식당 벽면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김치○○”이라는 음식점에서 등갈비김치찌름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찌름에 사용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 함**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마을”이라는 음식점에서 매장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해놓고,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국내산**을 제공하였지만, **김치볶음밥의 재료로 사용되는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함

➡ 형사입건

※ 올바른 원산지 표시

- 배추김치(반찬용):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 김치볶음밥(쌀: 국내산, 배추김치: 중국산)

Q7 |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는?

▶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 표시 예시

- 김치찌개 조리 시 ‘배추김치: 배추(국산), 고춧가루(국산)’, ‘배추김치: 중국산’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예시1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중국산보다 높은 경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배추(국산), 고춧가루(국산), 배추김치(중국산)을 섞음]

예시2 중국산의 섞음 비율이 국산보다 높은 경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국산, 고춧가루: 국산)을 섞음]



Q8 | 배추김치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 **국내에서 제조한 배추김치가공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표시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수입 배추김치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그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 배추김치가공품: 김치볶음밥, 김치만두, 김치찌개, 오징어김치전 등

-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만두, 김치전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

배추김치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시

• 김치만두

밀가루 30%(밀: 미국산), **배추김치 25%[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돼지고기 25%(국산), 마늘 10%, 양파 5%, 고추장 5%

⇒ 김치만두[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위반사례 |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분식”이라는 음식점에서 **냉동 김치볶음밥(가공품)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김치볶음밥에 사용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30만원 부과**

Q9 | 콩의 원산지 표시는?

-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 가공품을 포함)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직접 만드는 두부와 시판 두부를 조리할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콩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
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국내산)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
두부(콩: 중국산)
- **국내에서 제조한 콩가공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표시된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 콩가공품의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그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여야 함**
콩국수[두유(콩: 외국산)]
콩국수[콩가루(콩: 중국산)]

알아두기

- ▶ 두부, 콩국수, 콩비지 메뉴가 아닌 **콩자반의 콩, 청국장 등의 콩** 등은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 아님
- ▶ **두부류**
직접 만드는 두부와 시판 두부를 조리할 경우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며, 일반 두부, 순두부, 연두부 등을 말함
- ▶ **가공두부**
두부 또는 전두부 제조 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 또는 전두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예시 마파두부, 두부너비아니, 콩까스 등 가공품
- ▶ **유바**: 대두액을 일정한 온도로 가열시 형성되는 피막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위반사례

◎ 콩 원산지 거짓표시

“○○두부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하는 A씨는 **미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콩 원산지 거짓표시

“○○야식”이라는 음식점에서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품인 ‘두부[콩: 외국산(미국, 중국, 캐나다 등)]’를 구입하여 두부김치 메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두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두부를 국내에서 제조(생산)했다고 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두부의 원료로 사용된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콩 원산지 미표시

“○○골”이라는 음식점에서 된장찌개 메뉴를 판매하면서, **된장찌개에 사용된 두부의 원료인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30만원 부과

2-3. 상황별 원산지 표시방법

Q1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섞어 하나의 메뉴로 조리하는 경우는?

▶ 축산물, 쌀, 배추김치, 콩 등을 혼합한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섞음 표시는 하지 않음)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 표시 예시

- 함박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위반사례 | 원산지 미표시

“○○찌개”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부대찌개에 들어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60만원 부과**

* 미표시한 품목별로 과태료는 합산하여 부과됨.

Q2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어 조리하는 경우는?

- ▶ 동일 품목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원료별로 구분하여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가 같은 동일 품목이 여러 가지 메뉴에 사용될 때, 그 품목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음

동일 품목(축산물+식육가공품)을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 표시 예시

- 예시1** 볶음밥 조리 시 '돼지고기: 국산', '베이컨(돼지고기: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 볶음밥[돼지고기(국산)]
- 예시2** 볶음밥 조리 시 '돼지고기: 국산', '베이컨(돼지고기: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 볶음밥[돼지고기: 국산, 베이컨(돼지고기: 외국산)]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표시 예시

- 예시1**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예시2**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예시3**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음)
- 예시4** 공깃밥(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예시5**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Q3 | 음식점에서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외국산(A국·B국·C국 등)',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공품'의 원료가 아닌 음식점 의무 표시품목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된다면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며,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산' 원산지 표시 예시

-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된장찌개[두부(콩: 외국산)]
- 제육볶음(돼지고기: 외국산)

Q4 | 음식점에서 원산지 일괄 표시는?

- ▶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해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일괄 표시 예시

한식(일괄 표시)	양식(일괄 표시)	일식(일괄 표시)
<p style="text-align: center;">메뉴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 향정살(돼지고기: 칠레산) ■ 육회(쇠고기: 국내산 한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돼지고기: 멕시코산) ■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쇠육) ■ 차돌된장찌개(쇠고기: 캐나다산)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공기밥, 누룽지 ■ 후식 된장찌개(돼지고기: 멕시코산) <p>※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메뉴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박스테이크 (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 수제돈가스(돼지고기: 국내산) ■ 카레돈가스(돼지고기: 국내산) ■ 김치돈가스(돼지고기: 미국산, 배추김치: 중국산) ■ 생선가스(명태: 러시아산) ■ 치킨너겟(닭고기: 브라질산과 미국산 쇠육) ■ 토마토스파게티(돼지고기: 미국산) ■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김: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p>※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메뉴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회(넙치: 국내산, 참돔: 중국산) ■ 초밥(참돔: 일본산, 쌀: 미국산) ■ 생대구탕 ■ 회덮밥(넙치: 중국산, 쌀: 미국산) ■ 전복죽(쌀: 국내산) ■ 공기밥(쌀: 국내산) <p>※ 우리 업소에서는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p>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 쌀 원산지 거짓표시

“분식○○”이라는 음식점에서 **공깃밥은 국내산 쌀로, 새우볶음밥(가공품)은 베트남 쌀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여 적발됨

➡ 형사입건

◎ 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마을”이라는 음식점에서 국내산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반찬용 배추김치를 제공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로 조리한 김치볶음밥을 판매하면서,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함**

➡ 형사입건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구이”라는 음식점에서 구이용 메뉴인 **돼지고기(삼겹살)은 국내산을 제공 하였고, 제육볶음 메뉴의 돼지고기(목전지)는 미국산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때 원산지 표시판에는 메뉴별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고,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됨

➡ 형사입건

Q5 |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 음식점에서는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닭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격으로 구분한 원산지 표시 예시

메뉴판	후라이드 날개(닭고기: 국내산)	22,000원
	후라이드 날개(닭고기: 브라질산)	20,000원
	양념 날개(닭고기: 국내산)	24,000원
	양념 날개(닭고기: 브라질산)	22,000원

- 만약, 브라질산 닭고기(날개)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날개)가 있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원료 수급사정으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된다면,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예시 원료 수급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와 태국산 닭고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표시 - 원산지 표시란: 닭고기(브라질산, 태국산)**

※ 브라질산을 사용할때는 브라질산만 표시하고 태국산을 사용할때는 태국산으로 표시. 변경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함.

위반사례

◎ 닭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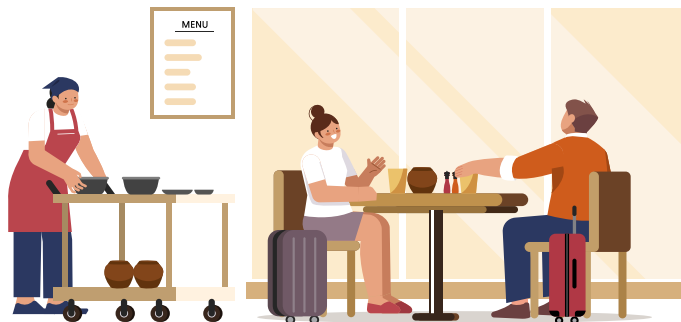
“치킨○○”이라는 음식점에서 국내산 닭고기를 치킨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다가, 수급가격 등의 문제로 태국산 닭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게 되었음에도 **원산지를 변경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숯불”이라는 음식점에서 원료 수급사정 및 원가 절감 등의 문제로 멕시코산, 칠레산, 미국산의 돼지고기(삼겹살)를 번갈아가면서 구입하여 조리하였다.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변경 될 때마다 올바른 원산지로 수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 변경 없이 ‘삼겹살(돼지고기: 미국산)’으로만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적발됨

➡ 형사입건



Q6 | 음식점에서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 세부기준은?

▶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식육가공품,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은 그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합니다.

-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 조리세트**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쌀·배추김치·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포함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축산물은 식육가공품에 한함)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예시1 사골우거지국(식육추출가공품): **소정육 20.5%(호주산)**, 배추우거지 14.5%(국내산), **사골농축액** 2.3%**{우사골추출물[우사골(국내산), 우골(국내산), 정제수], 정제염(국내산)}, 양념 1.5%, ...
⇒ **사골우거지국: 쇠고기(호주산)**

* 주원료로 원산지가 표시된 **소정육은 식육**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임

** **사골농축액은 ‘식육’이 아닌 복합원재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함**

예시2 김치볶음밥(식품의 유형: 즉석조리식품)

쌀 42.3%(국산), 김치 38.5%[배추(국산), 무(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마늘, 대파], 옥수수기름 5.2%[옥수수배아 (미국산)], 양파, 대파, ...

⇒ 김치볶음밥: **쌀(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김치볶음밥은 쌀과 배추김치 가공품에 해당되어 주원료로 원산지가 표시된 쌀과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예시3 김치만두(식품의 유형: 만두류)

밀가루 30%(밀: 미국산), 배추김치 25%[배추(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돼지고기 25%(국산), 마늘 10%, ...

⇒ 김치만두**[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만두류는 식육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아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위 예시의 김치만두는 **배추김치 가공품에 해당되어** 주원료인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수입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시

• **미국산 소시지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 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 미국산) /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Q7 | 음식점에서 냉동핫도그(빵류)를 구입하여 전자레인지에 데워 판매 시 원산지 표시는?

▶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단순가열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조리’에 해당**되므로, 즉석조리 가공품(핫도그, 만두류, 치킨텐더 등)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판매하는 경우에도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식품유형 및 조리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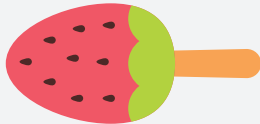
- (구입한 가공품일 경우)

냉동핫도그를 데워서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냉동핫도그의 식품 유형은 ‘빵류’**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가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조리한 경우)

소시지에 밀가루 반죽을 입혀 직접 튀긴 핫도그를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소시지는 **식육가공품인 ‘소시지류’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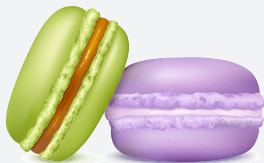
직접조리 시 음식점 표시기준 적용가능



가공품인 아이스크림을 판매
➔ 가공품 표시기준 적용



아이스크림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
➔ 음식점 표시기준 적용



가공품인 냉동 마카롱을
실온해동하여 판매
➔ 가공품 표시기준 적용



마카롱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
➔ 음식점 표시기준 적용

가공품 조리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시

- 1 빵·과자·아이스크림류, 김밥류 등을 휴게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음식점 표시기준 적용
⇒ ‘조리’에는 단순 가열, 토핑 등을 포함
- 2 실온에서 해동한 완제품은 가공품 표시기준(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료 원산지 표시) 적용
- 3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가공품 표시기준(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료 원산지 표시) 적용

Q8 | 음식점에서 가공 완제품을 조리하지 않고 판매·제공 시 원산지 표시는?

- ▶ 음식점에서 두부과자, 쿠키, 육포 등의 가공 완제품을 구입하여 손님에게 판매·제공 시, 가공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가공품 표시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휴게음식점에서 가공품인 마카롱, 냉동케이크, 냉동빵류 등을 구입하여 **실온해동하여 판매·제공 시 그 가공품에 표시되어 있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완제품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가 손에 닿지 않는 쇼케이스에 보이지 않게 진열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원산지 확인이 안 될 경우 **푹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마카롱, 빵 등을 **직접 만들어(조리) 판매 할 경우**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Q9

음식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농산물(과일, 채소 등)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음식점에서 **농산물을 생과일주스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한다면, 해당 농산물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29개)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사례 |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쌈밥”이라는 음식점에서 **텃밭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고구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2-4. 매장에서 원산지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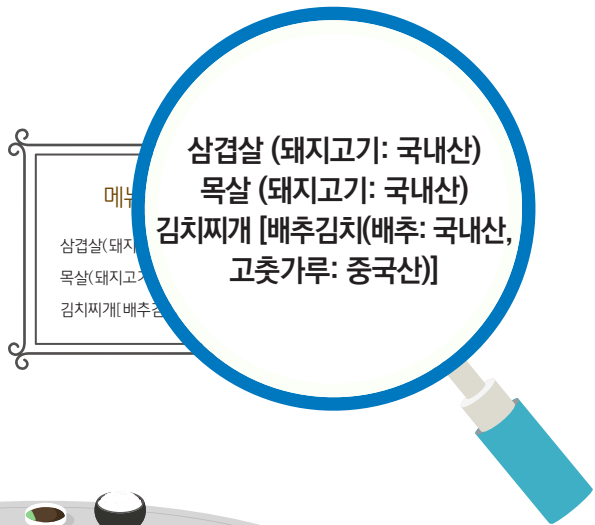
Q1 | 음식점에서 메뉴판,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한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문답 P.46 Q2. 참조)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합니다.**

표시품목	원산지	메뉴명
돼지고기	국내산	삼겹살
돼지고기	국내산	목살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반찬
	고춧가루(국내산)	반찬
쌀	국내산	공기밥



Q2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규정에 따른 위치에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판' 제작기준

-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일 것
-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라.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글자크기 예시
60
포인트
|
30
포인트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판'의 부착(게시) 의무는 없음

Q3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부착 위치는?

▶ **게시판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는 업소 내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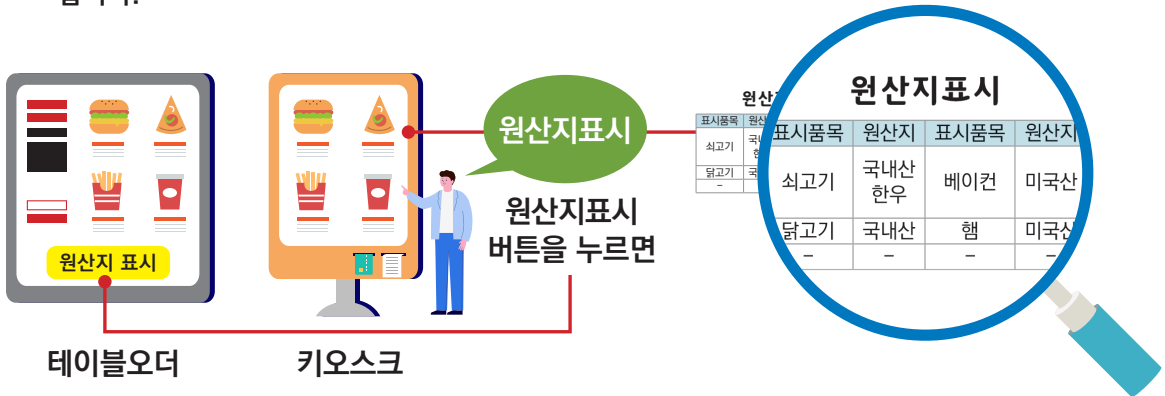
* 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 **취식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Q4 | 음식점에서 키오스크(테이블오더)를 이용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매장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모니터 화면에 전자적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메뉴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테이블오더 또는 키오스크에서도 별도의 창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메뉴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별도 메뉴판 또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및 게시판에도 **원산지를 병행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Q5 | 음식점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소비자가 **QR코드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표시판이나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QR코드를 병행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6 |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위탁 및 집단급식소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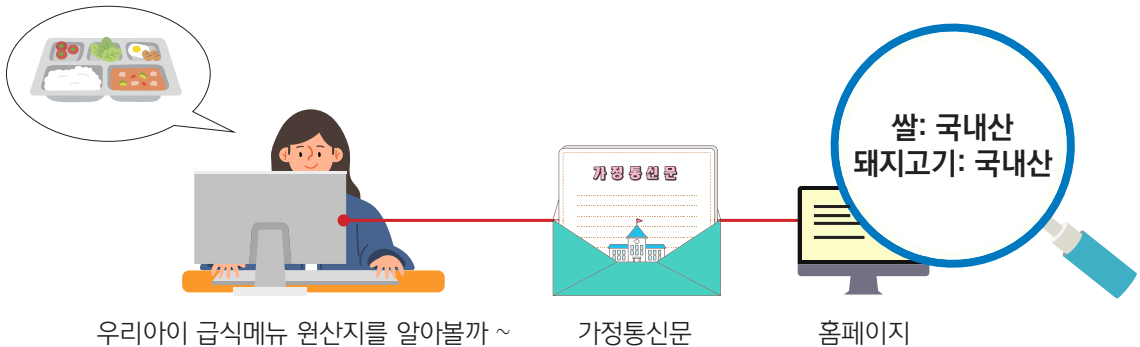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풋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2-5.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Q1 |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에 해당**되므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메뉴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원산지를 붙여서**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음식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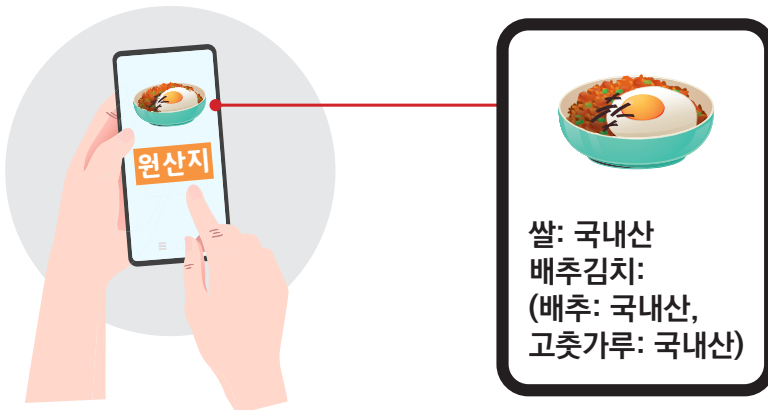
※ 첫 화면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

- 글자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함)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하며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함



Q2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 시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 ▶ 음식점에서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음식점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례

◎ 돼지고기, 쌀 원산지 미표시

“○○족발”이라는 음식점에서 족발메뉴를 판매하면서 업소 내부 벽면에 부착한 원산지 표시판과 배달앱에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제품 포장재(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포함)에는 돼지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60만원 부과

※ 미표시한 품목별(돼지고기, 쌀)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

◎ 닭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치킨”이라는 음식점에서 업소 내부에 벽면의 원산지표시판과 배달앱 원산지 표시란에는 양념치킨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브라질산으로 표시하였으나, **배달제품 포장재에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함**

➡ 형사입건

◎ 오리고기 원산지 미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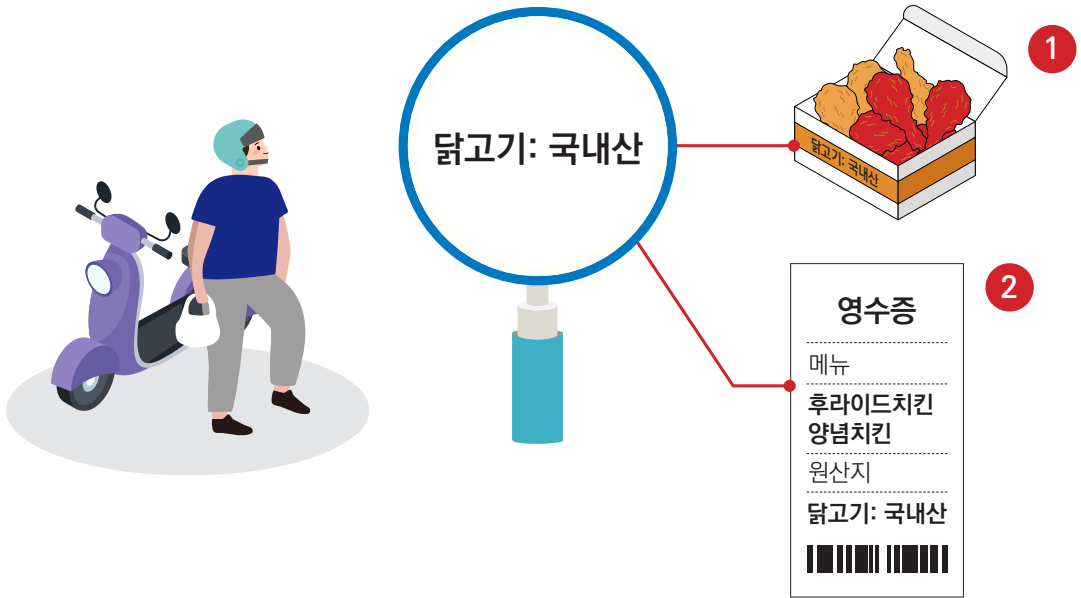
“○○식당”이라는 음식점에서 오리고기가 들어간 샐러드 메뉴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30만원 부과

Q3 배달앱 등으로 포장주문 후 손님이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한 경우 통신판매에 해당되므로, 매장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판매 제공 시에는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① 포장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②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PART

3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PART
3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Q1 |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은?

형사처분

형사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과징금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업체 공표

농식품부,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Q2 |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					
구분	위반행위	1차	2차	3차	4차
과태료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	200	300	300
	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	30	60	100	100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미표시	품목별 30	품목별 60	품목별 100	품목별 100
	수산물 표시대상 20품목 미표시	품목별 30	품목별 60	품목별 100	품목별 100
	살아있는 수산물 미표시	5 ~ 1,000 이하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5~1,000 이하)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	20	40	80	80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연락처

지원사무소명	연락처
본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8
경기지원(안양)	031) 470-2942
서울	02) 3484-3300
서울(분소)	02) 2218-4000
인천	032) 310-3600
수원	031) 259-5100
화성·오산	031) 538-1300
의정부·동두천·양주	031) 839-1800
평택	031) 550-4400
안성	031) 8046-3700
남양주·구리	031) 560-4300
가평	031) 589-3900
광주·성남·하남	031) 538-6900
용인	031) 359-2600
이천	031) 770-5800
파주·고양	031) 956-1700
포천·연천	031) 540-4900
여주	031) 880-8000
양평	031) 770-7300
강화	032) 320-3800
김포	031) 5186-4700
강원지원(춘천)	033) 254-2044
원주	033) 744-6060
횡성	033) 344-5224
강릉	033) 651-6061
삼척·동해	033) 574-6060
속초·양양	033) 631-6060
고성	033) 681-6070
홍천	033) 435-6060
영월	033) 374-6060

지원사무소명	연락처
평창	033) 333-6060
정선·태백	033) 563-6060
철원	033) 452-2504
인제	033) 461-6060
양구	033) 481-6624
충북지원(청주)	043) 271-9583
충주	043) 843-6060
제천·단양	043) 646-6060
옥천	043) 731-6060
영동	043) 744-7561
괴산·증평	043) 832-6060
보은	043) 544-6060
음성	043) 873-6060
진천	043) 537-6060
충남지원(대전)	042) 256-7901
천안	041) 551-6060
아산	041) 547-6080
공주	041) 853-6060
세종	044) 867-7092
서산·태안	041) 663-6060
논산	041) 736-6060
금산	041) 752-6060
부여	041) 835-3301
보령	041) 932-6060
서천	041) 952-1521
홍성	041) 631-7290
청양	041) 942-9600
예산	041) 335-6060
당진	041) 354-6060
전북지원(전주·완주)	063) 243-9512
익산	063) 841-6060

지원사무소명	연락처
군산	063) 452-6399
남원	063) 635-6060
순창	063) 653-4272
임실	063) 640-8200
정읍	063) 533-6060
김제	063) 548-6060
부안	063) 582-6060
진안	063) 432-6060
장수	063) 351-6061
무주	063) 322-6060
고창	063) 563-6060
전남지원(광주)	062) 970-6200
목포·신안	061) 243-6060
무안	061) 453-8270
여수	061) 651-6060
순천·광양	061) 742-6060
나주	061) 333-2136
화순	061) 373-6161
담양	061) 381-6060
장성	061) 394-6060
곡성·구례	061) 363-9321
고흥	061) 832-6060
보성	061) 852-2641
장흥	061) 863-6060
강진	061) 434-6060
완도	061) 554-2026
해남	061) 536-6060
진도	061) 543-6060
영암	061) 473-6060
영광	061) 351-2016
함평	061) 322-6060
경북지원(대구)	053) 327-1305
포항·울릉	054) 253-6060
경주	054) 743-6060
김천	054) 437-6060
안동	054) 856-6060

지원사무소명	연락처
영천	054) 332-6060
경산	053) 816-6060
청도	054) 371-6060
구미·칠곡	054) 457-6060
상주	054) 536-6060
의성·군위	054) 832-6060
영덕	054) 732-6060
청송·영양	054) 874-6060
성주	054) 931-6060
고령	054) 954-6060
문경	054) 553-6060
예천	054) 655-6060
영주	054) 634-6060
봉화	054) 672-6060
울진	054) 782-6060
경남지원(창원)	055) 230-0800
경남지원분석실	051) 852-8045
부산	051) 868-6060
울산	052) 265-6060
진주	055) 759-6060
사천	055) 855-2812
통영·거제	055) 648-6060
고성	055) 674-6060
밀양	055) 352-6060
김해·양산	055) 321-6060
함안	055) 582-6060
의령	055) 570-6200
창녕	055) 533-6060
하동	055) 884-6060
남해	055) 864-6060
함양	055) 962-6060
산청	055) 972-6060
합천	055) 931-6060
거창	055) 942-6060
제주지원(제주)	064) 728-5203
서귀포	064) 735-4900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발행월 2025년 12월
발행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상경
기획·편집 원산지관리과장 박홍진
원산지관리과 김영교, 정재호, 황다운
발행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제작 아름다운기획 054-436-2725